

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주관기관 모집 공고

(예비)재창업자의 사업화 및 성장지원을 위해 특화된 역량과 인프라를 보유한 「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」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2024년 12월 6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※ 본 모집공고는 (예비)재창업자를 지원할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공고문이며, '25년 예산안 확정 결과에 따라 선정규모 및 지원예산은 변동될 수 있음(재창업자 모집 공고는 '25년 1월 말 예정)

1 사업 개요

□ 사업목적

- 사업경험을 보유한 우수 (예비)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패 원인분석을 통한 문제해결형 교육에서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성공 재창업 유도

□ 선정규모 : 6개 내외 주관기관

< 권역별 주관기관 선정 규모(안) >

구분	수도권(2)	비수도권(4)				합계
	서울·경기·인천권	강원·충청권	호남·제주권	대경권	동남권	
선정규모(개)	2	1	1	1	1	6

□ 지원예산 : 기관당 2.8억원 내외

- * (예비)재창업자 매칭 규모에 따라 주관기관 및 예산을 차등하여 배정
- ** (예비)재창업자의 창업사업화 지원예산은 별도 배정

< 주관기관 배정예산(안) >

구 분	지원내용	예산
창업프로그램 운영비	•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	총 2.8억원 내외
전담조직 운영비	• 인건비, 일반수용비, 여비, 회의비 등	

- 본 사업의 예산 변동사항 발생 및 주관기관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향후 지원 예산 및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

□ **지원기간: '25 ~ '28년 (4년, 2년 + 2년)**

- 매년 협약기간 만료 시점에 성과평가를 통해서 부실한 사업운영, 성과가 미흡한 경우 등은 중도에 지원을 중단(협약 해지)할 수 있음
- 추가 2년('27~'28년)에 대한 지원은 '25 ~ '26년 사업수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속 지원(협약) 여부 결정하되, 2년 연속 최하위 1개 기관은 1년간 사업 참여 제한

2

신청 자격 및 신청 제한 대상

□ **신청 자격**

- (예비)재창업자 지원 역량을 보유한 대학, 공공기관, 민간기관 (단체) 등
 - (예비)재창업자에게 양질의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재창업 성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기관(공공·민간)과 협력하여 사업 참여 가능
 - * '신청기관 - 협력기관' 구조로 사업 참여 가능하나 협약은 전담기관(창업진흥원)과 신청기관(1개 기관) 간 진행하며 총 사업비 관리·집행 모두 신청기관이 일괄 수행

< 주관기관 신청 자격 구분 >

구분	신청 자격
대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『고등교육법』 제2조(학교의 종류)의 각 호에 해당되는 대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2024년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에 한함 (교육부, '23.7.6. 발표) ** 본교 및 분교 (캠퍼스 포함), 기술지주는 동일 사업에 함께 신청 불가 ▶ 『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』 제3조 1, 2, 3, 3의2호에 해당하는 기관

구분	신청 자격
공공 기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『공공기관운영법』 제4조(공공기관)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▶ 『지방공기업법』 제2조(적용범위)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 ▶ 『지방출자·출연법』 제2조(적용대상 등)에 해당하는 법인·단체 또는 기관
민간 기관 (단체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『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▶ 『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』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▶ 『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(액셀러레이터) ▶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기업,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법인·협회·단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*이 "B" 이상이어야 함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*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로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(또는 기업어음)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(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,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) 기준</p>

□ 신청 제한 대상

- 신청기관(또는 대표자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

- 『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』 등 관계 법령·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
-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
 - * 단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
-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
-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관
-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
-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
- 최근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'협약 해약' 판정을 받은 경우(공고일 기준)
- 2024년에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
-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

3

신청요건

① (예비)재창업자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(필수사항)

- (대응자금) 매년 총사업비의 20% 이내(약 7천만원 내외)* 이상의 대응자금을 투입하여 (예비)재창업자 지원 등 사업 운영

* 대응자금 의무 투입 비율은 연차별로 증감할 수 있음

- 대응자금 총액 중 50%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투입해야 하며, 필요시 50% 이하는 현물*로 대응 가능

* 주관기관 협약 기간 내 전담 인력 인건비,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계상 가능

- 주관기관이 자체 조성하거나 민간 VC 등을 통해 재도전성공패키지 전용 투자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대응자금으로 인정

* 투자자금은 주관기관이 (예비)재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자금이며 투자 계획이 있는 경우 선정평가 서면평가 시 가점 부여하고, 선정 후 당해연도에 선정된 (예비)재창업자에게 투자 실행 시 성과평가 가점 부여

< 대응자금 구성 비율 (예시) >

현금 (A)	현물 (B)	합계 (C=A+B)
35백만원 이상 (50%~100%)	35백만원 이하 (50%~0%)	70백만원 (100%)

- ※ 내·외부 재원 투입 시, 협약 기간 내 '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'는 내용의 협약서 또는 공문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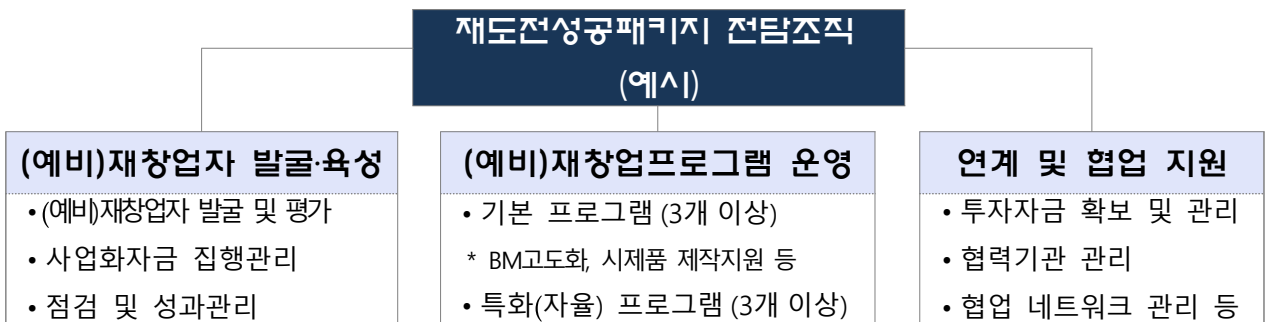
* 대응자금은 협약체결로부터 3개월 이내 확보하여야 하며, 지정된 기한 내 재원을 미확보하는 경우 주관기관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
② 재창업성공패키지 전담조직 설치·운영(필수사항)

- (전담조직 설치)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수행을 위해 주관기관 내에 별도의 전담조직 (팀, 부서 등)을 설치·운영

* 기존 조직, 팀에서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을 수행할 경우 업무분장 상 본 사업 수행할 예정임을 명시 후 공문으로 제출

- (예비)재창업자 발굴, 창업 프로그램 운영 등 (예비)재창업자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·운영·관리 기능을 전담
- (전담조직 구성) 전담조직의 장 (1인)과 전담인력 (2인 이상)으로 구성
 - 전담인력 : 사업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을 2인 이상 필수 구성하고, 그 중 창업지원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를 1명 이상 구성
 - * 전담인력은 '재도전성공패키지' 지원사업 업무 참여율이 100%인 수행인력을 의미



- (창업지원 공간 제공) 지원 공간 100m² 이상 (사무공간 포함)
 - 전담조직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 필수 구축 (33m²(10평) 이상)

4 신청 및 접수

□ **신청 기간** : 2024년 12월 16일(월) ~ 2025년 1월 3일(금) 16:00까지

□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

- (신청 방법) K-스타트업 누리집 (www.k-startup.go.kr) →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신청

①회원가입 (신청기관 대표자 명의)* → ②K-스타트업 로그인 → ③사업신청 클릭 → ④"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신규 주관기관 모집공고" 클릭** → ⑤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 → ⑥기본정보(일반현황 및 인력정보) 입력 → ⑦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(용량제한 100MB 유의) → ⑧제출 → ⑨신청내역조회('마이페이지-사업신청현황' 확인)

* 회원가입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진행

○ (제출서류)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제출을 위한 서류(우편 제출 불가)

제출서류 목록	주요내용	비고
제출공문	신청기관(대표기관)의 제출 공문	
사업계획서	신청기관 사업수행계획서(협업기관 포함)	기관장 직인본 제출
증빙자료	사업계획 내 기재 사항에 대한 증빙자료	
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	전담·겸직 등 사업 참여 인력별 동의서	인력별 작성
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	신청기관의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	기업신용평가 제출 (민간기관(단체)에 한함)

* 신청 마감 이후에는 제출한 자료의 수정·보완·교체 및 추가 제출은 절대 불가

5 평가 및 선정

□ 평가 방법 및 절차

○ 평가는 ① 서류 → ② 발표 순으로 실시, 서류평가로 선정 규모의 2 배수 내외를 선발하고, 통과기관에 대해 서류평가 점수 30%, 발표 평가 점수 70%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 결정

- **요건검토** : 전담 조직 구성, 외부 재원 (대응자금), 인프라 공간 (사무실) 등 주관기관 기본 신청요건 및 자격 충족 여부 등 검토
- **서류평가** :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평가하여 고득점순으로 발표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
- **발표평가** : (예비)재창업자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관리, 기관의 보유 자원,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
* 평가시간 : 30분 내외 (발표 15분, 질의응답 15분 이내)

** 발표자는 신청기관의 대표자(또는 전담조직의 부서장) 발표를 원칙으로 함

요건검토	→	서류평가	→	발표평가	→	결과 통보
'25.1월 초		'25.1월 중		'25.1월 중		'25.1월 말

*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신청기관별 발표평가 세부 일정은 별도 안내

** 이의신청은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,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

□ 최종 선정

- 서류평가와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선정 후보기관을 결정하고, 심의위원회를 통해 주관기관을 최종 선정
 - *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주관기관 선정 규모보다 적게 선정할 수 있음
- 평가위원회가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신청기관에 대해서는 전담기관(창업진흥원)이 별도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

6 유의 사항

-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
- 선정 이후 협약일 이전까지 평가과정에서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협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
-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·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중소벤처기업부 (창업진흥원 등)의 창업사업화 지원 사업에 3년 간 참여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모든 신청절차(서류 온라인 제출 및 접수)는 신청 기간 내 완료되어야 하며, 마감 이후 추가 제출 불가
 - * 제출서류 등에 누락·착오가 있더라도 신청 마감 이후 수정·보완·교체 등 일체 불가
- **대응자금 확보, 전담조직 및 보육·지원 공간 구성 등 신청요건 중 “예정(확보·설치 등)”으로 기재한 사항은 협약 체결일 이후 3개월 이내에 계획대로 이행하여야 함**
 - * 의무사항 이행 내용을 반영한 수정사업계획서를 반드시 제출
 - ** 기한 내 신청요건 미충족 시,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할 수 있음
- 신청기관은 타 기관을 협력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나, **협약은 전담기관 (창업진흥원)과 신청기관 간 진행**
 - * 모든 사업비는 신청기관에서 일괄 관리·집행 (협력기관에 사업비 재교부 불가)
 - ** 협력기관과 참여기관은 단독으로 주관기관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, “재도전성공 패키지 사업 주관기관”이라는 명칭 사용불가

- 최종 선정된 기관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은행 계좌 필수 개설 및 사업비 카드를 발급하고,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(PMS)을 통한 사업비 집행 (회계처리)이 가능하여야 함
 - * 창업사업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, 사업수행 불가 및 협약 해지
-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, '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'을 통해 관리 운영됨
- 선정 이후 협약 기간 내에 대응자금 및 투자자금 미집행 시,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미집행 비중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또는 주관기관 성과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
- 선정 이후,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 및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- 선정된 주관기관은 창업사업화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, 사업별 세부관리기준,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
- 사업 운영 기간 도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 부진, 주관기관 역할* 미이행 등의 사유 발생, 주관기관 신청 자격에 위반되는 사항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음
 - * 「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내 제7조 주관기관의 역할(업무)

7

문의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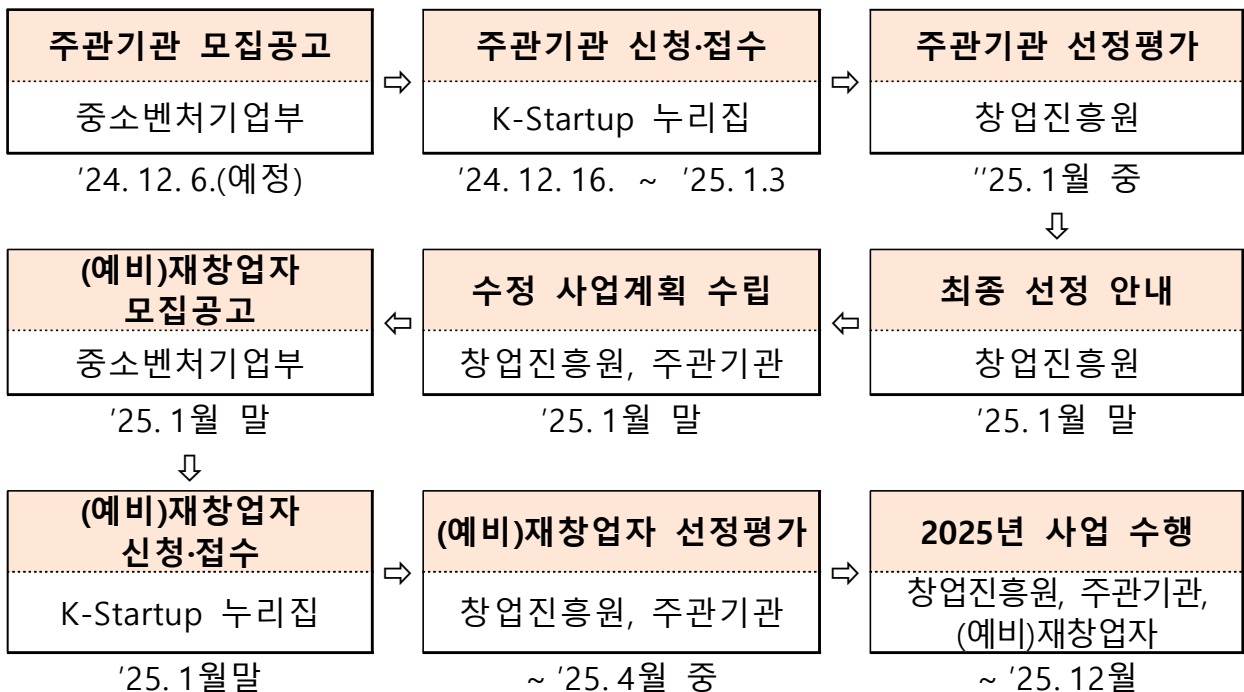
- 신청·접수 시스템(K-Startup) 문의 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
 - 사업 관련 문의 : 창업진흥원 리첼린지팀 044-410-1992, 1984, 1763
- ※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, K-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문의 가능 (Quick Menu - 상담하기)

참고 1

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개요

- (목적) 사업경험을 보유한 우수 (예비)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실패 원인분석을 통한 문제해결형 교육에서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성공 재창업 유도
- (지원대상) 재창업을 준비중인 자(예비 재창업자) 또는 재창업 7년 이내 기업의 대표
- (지원내용) 사업화 자금, 재창업 교육 및 상담 등 재창업 성공을 위한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
- (총괄·전담기관) 중소벤처기업부·창업진흥원
- (추진 일정) 공고·모집, 평가, 교육, 사업화 등

< 2025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일정(안) >



* 연간 사업 운영 상황 등에 따른 변동 가능

참고 2**재도전 성공패키지 주관기관 역할****① (예비)재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**

- (예비)재창업자 선정평가, 사업화 자금 집행관리·정산, 점검, 성과 평가 및 성과관리, 지원종료 후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 운영·관리
- **우수 창업자 발굴** : 우수 재창업자 발굴을 위한 홍보 및 정부지원 대상 선정평가 운영, 주관기관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(예비)재창업자를 상시 발굴
- **성과관리** : 졸업기업 및 당해연도 지원기업 주요성과(매출, 투자, 연계지원 등)를 반기별로 조사 및 관리
- **회계교육** : 선정된 재창업자 대상 정부지원금의 기준, 방법 등 관련 지정 회계법인(전담기관 지정)의 교육 운영 (재창업자 선정 시 1회)

② 지원 프로그램 운영 (6개 이상 추진 : 기본 3개 이상 + 특화 3개 이상)

- ※ 동일 프로그램으로 기본, 특화(자율) 프로그램 중복 운영 불가
- ※ 자체 보유 교육프로그램 운영, 민간(대·중견기업) 연합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능
- (기본 프로그램) 제시된 프로그램 유형 중 민·관 연계 유형 포함 3개 이상을 선택하여 유형별 프로그램 기획·운영(실패원인분석 필수)

< 필수 프로그램 유형 및 주요 내용 >

	유형	주요내용
기본 프로그램 (안)	실패원인분석 (필수과정)	심리치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폐업원인 등을 분석하는 프로그램
	BM고도화	상품·서비스 등 비즈니스(BM) 모델 고도화 관련 프로그램
	실증·검증	BM 실효성 검증을 위해 고객·시장·기술 등 검증 관련 프로그램
	초기투자유치	후속자금 확보를 위한 VC·AC·CVC 등 투자사 연계 프로그램

* 실패 원인분석은 선정자 및 탈락자 등 폐업경험을 보유한 누구나 참여 가능

- **(특화(자율) 프로그램)** 기관이 보유한 특성·강점·전문성을 반영한 (예비)재창업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자율 프로그램 3개 이상 기획·운영

< 특화 프로그램 유형 및 주요 내용 >

	유형	주요내용	비고
특화 프로그램 (안)	제조육성	제조 관련 실습 지원, 전문인력 컨설팅 등	메이커스페이스 활용 등
	IT 융합	IT 융합 관련 인프라·실습지원·전문인력 컨설팅 등	AI Tool 활용 지원 등
	판로확대	민간·공공판로 개척 지원 프로그램	전사회 조달시장 입점 등
	민관 연계	대중견기업 등 민간(투자사 등)과 연계한 성장지원 프로그램	투자사 상담, IR대회 등
	저변확대	재창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	재창업 컨퍼런스 등

* 단순 행사를 외부 용역사에 위임하거나, 기관 간 네트워크 등 단순 프로그램은 지양, (예비)재창업자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우수한 협업모델(운영 방법·지원내용) 제시

- **기타 프로그램**

- **(멘토링 운영)** 재도전성공패키지 선정자 및 탈락자 등을 대상 경영·기술·마케팅 등 재창업기업이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매칭 및 운영 방안 제안

* 사업계획에 제출한 제안 기관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스타트업의 원활한 협업 활동 수행 및 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

- **(네트워킹 행사 등)** 지원기업 현황을 고려하여 워크숍, 성과공유회* 등 창업자 간 네트워킹이 가능한 행사 운영

* 사업성과 창출 및 홍보 극대화 등을 위해 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과 협업 가능

- **(규제발굴·홍보)** 점검, 간담회 등을 통해 재창업자 현장 목소리 청취 후 사업·정책·규제개선 사항 등 발굴 및 창업자 성과 홍보 상시 운영

- **(기타사항)** 전담기관 및 총괄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관련 프로그램 운영 협조 및 지원

참고 3

재도전 성공패키지 주관기관 평가지표

평가항목		평가지표	배점
서류 평가	1. 기관 현황 및 공간	▶ 신청기관의 현황 및 사업참여 의지 ▶ 창업지원 공간 구축현황(전담조직 등)	20
	2. (예비)재창업자 지원 실적 및 성과	▶ 창업 지원사업 수행실적 및 성과 ▶ (예비)재창업자·창업자 지원 실적 등	20
	3. 사업운영 계획	▶ 창업기업 발굴 및 관리계획 ▶ 창업프로그램 운영 계획 등	50
	4. 성과 및 예산관리	▶ 사업성과 제고 및 관리 방안 ▶ 예산(외부재원 포함) 집행계획 및 적정성	10
	5. 가점	▶ 대응자금 (현금) 조성 규모 * 0.7억원~1억원 미만 1점, 1억원이상~1.5억 미만 2점 1.5억원 이상~2억 미만 3점, 2억이상~2.5억 미만 4점 2.5억이상 5점	(최대) 5
합 계			105
평가항목		평가지표	배점
발표 평가	1. 비전 및 추진전략	▶ 중장기 비전 및 목표, 전략, 계획 ▶ 전담조직 구성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등	20
	2. 창업기업 발굴·관리	▶ 창업기업 발굴 및 생존율 제고전략 등 ▶ 창업기업 모집·발굴 및 사업 성과관리 방안 등	20
	3. 프로그램 운영계획	▶ 기본·특화(자율) 프로그램 운영계획 등 ▶ 특화(자율) 프로그램 차별성 및 실현 계획 등 ▶ 기타 프로그램(멘토링, 규제발굴 등) 운영 계획 등	50
	4. 사업비 구성	▶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▶ 예산 집행계획(대응자금 포함)	10
합 계			100